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6 선고 2024가단107063(본소), 2024가단132748(반소)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공유물분할]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욱

피고(반소원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2.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D은 18,632,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2024. 12. 6.까지는 연

-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E은 18,632,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6.부터 2024.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반소피고) A에게 11분의 3, 원고(반소피고) B, C,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1분의 2의 비율로 분배한다.
3. 원고(반소피고) B, C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25%, 피고(반소원고)들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23,299,866원, 원고(반소피고)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 원고(반소피고) C(이하 ‘원고 C’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3,111,4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22. 9. 7.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사후 2023.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D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22. 9. 3. 망인의 직불카드(속칭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망인의 사후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 E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합계 17,112,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그중 11분의 3인 4,667,125원은 원고 A의 몫이고, 각 11분의 2인 3,111,416원씩은 원고 B와 원고 C의 몫이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A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속등기비용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요되는 비용

12,680,078원을 원고 A이 모두 출연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돈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각 2,305,468원(= 12,680,078원 × 2/11, 1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차인 G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23. 10. 4. 망인의 사망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 G과의 임대차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자신의 재원으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돈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15,454,545원(= 85,000,000원 × 2/11, 1원 미만 버림)에서 망인의 사후 위 G으로부터 1년 동안 수령한 차임 중 피고들의 몫으로 원고 H이 자인하는 각 327,272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15,127,273원(= 15,454,545원 - 327,2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차인 I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23. 1. 4. 및 2023. 5. 14. 두 번에 걸쳐 망인의 사망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을 자신의 재원으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돈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2,727,272원(= 15,000,000원 × 2/11, 1원 미만 버림)에서 망인의 사후 위 I으로부터 1년 동안 수령한 차임 중 피고들의 몫으로 원고 H이 자인하는 각 1,527,272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1,200,000원(= 2,727,272원 - 1,527,2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8,632,741원(= 2,305,468원 + 15,454,545원 +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피고 D은 2024. 3. 19.부터, 피고 E은 2024. 3. 16.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A이 11분의 3 지분, 원고 B, C, 피고 D, E이 각 11분의 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택과 그 부지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 모두 경매를 통한 분할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를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C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경매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철

별지